

2020년도 제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2. 13.(목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재화(분과위원장 대행), 박정인,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15호)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제3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61건(안건번호 제2020-5602호~567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5602호~5620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본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5621호는 블로그에서 출판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5622호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본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5623호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본 만화 한 화 전체분량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6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

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8건(안건번호 2020-444호~451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2개 안건은 가결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2개 안건은 부결함.

○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1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48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모두 344개의 URL 정보에 대하여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5개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48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모두 344개의 URL 정보는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제2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합당해 보임. 제3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해당할 수 있음. 제3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두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 및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함이 바람직해 보임.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다음은 제1호 안건인 회의록 2쪽의 게임기명, OSP 명, 3쪽의 OSP명, OSP와 관련된 단어, 회사명, 6쪽~7쪽의 저작물명, 7쪽의 게시물 내용, 8쪽의 OSP명, 저작물명, 9쪽의 저작물명, 11쪽의 밴드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 12쪽의 저작물명, 민원 신고 내용, 13쪽의 OSP명, 게임기명, 블로그명, 게시물 제목, 게시물 내용, 14쪽의 게시물 내용, 게임기명, 15쪽의 게임기명, 기사 제목, 16쪽~20쪽의 게임기명, 21쪽의 저작물명, 22쪽의 저작물명, 자막 제작자명, 23쪽~24쪽의 저작물명, 25쪽의 블로그명, 26쪽의 저작물명, 27쪽의 OSP명, 역자명, 식자명, 29쪽의 저작물명, 30쪽의 OSP명, OSP와 관련된 단어, 기업명, 31쪽의 OSP명, 기업명, 32쪽~34쪽의 OSP명, 34쪽의 판매자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 해당 정보는 민원인 신고 건과 관련된 내용이 많음. 비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B 위원 : 게시물이 특정될 수 없도록 비공개해야 함.

- A 위원 : 같은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게임기명, OSP명, OSP와 관련된 단어, 회사명,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밴드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 민원 신고 내용, 블로그명, 게시물 제목, 기사 제목, 자막 제작자명, 역자명, 식자명, 판매자명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4쪽~46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접속차단된 해외 사이트의 대체 사이트 URL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46쪽~49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B, C, A 위원 :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5602호~5673호로
게시물 수는 모두 261개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602
호~561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에서 일본 만화를 판매한
총 12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614
호~5620호는 민원인이 직접 채증하여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를 이용해
신고한 건임. 웹하드에서 일본 만화를 판매한 총 10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해당 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602호~5620호의 어문
저작물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건번호 제2020-5619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민원인이 직접 신고
도구를 이용하여 보호원에 제출한 자료임. 웹하드에서 ‘(♡♡)♡♡♡♡

♡♡♡ ♥♥♥♥ ♥♥♥♥ (♥♥♥ : ♥♥♥♥♥♥♥♥♥♥)를 판매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5620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헤비 업로더로 보임.

- B 위원 : (해당 안전 목록을 보면서)안전번호 제2020-5614~5620호의 게시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시정권고를 받은 바가 있는 복제·전송자로 보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5602호~562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여야 함.
- A 위원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제2020-5602호~562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B 위원 : 합법 시장에서 판매 중인 출판물을 블로그에서 텍스트 파일 형태로 무단 제공하고 있음.
- C 위원 :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며,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62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622호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상당한 분량의 일본 만화 불법복제물에 대한 사안임. 2020. 1. 30.부터 2020. 2. 3.까지 민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모니터링하여 심의를 요청함.
(URL에 접속하여 직접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면서)해당 커뮤니티 사이트는 심의위원회에서 과거에 다룬 바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팝업 광고, 배너 광고도 함께 보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622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상당한 분량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함이 타당해 보임.

- A 위원 : 같은 의견임.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62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562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 ○○○ ○○○’ 한 화 전체분량을 제공한 사안임. ‘○○○○○○’는 일본에서 2019. 9. 14.에 17권까지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서 2019. 3. 14.에 14권까지 출간되어 판매 중임.
(일본 만화 판매 현황 자료를 보여주면서)네이버 시리즈에서 해당 저작물을 대여 및 소장하여 감상 가능하며, 인터넷 서점 및 전자책으로 구매할 수 있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562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일본 만화의 한 화 전체분량을 무단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 B 위원 :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제2020-562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624호~5673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영화 '백두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632호는 2019. 12. 19.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6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2. 11. 기준으로 상영 중임. 해당 영화는 2020. 1. 22.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닥터 두리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644호는 2020. 1. 8.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8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2. 11. 기준으로 상영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 속에는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 A 위원 : 국내 영화보다 외국 영화가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영화 '해치지않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658호는 2020. 1. 15.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23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2. 11. 기준으로 상영중임. 해당 영화는 2020. 2. 4.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A 위원 : 해당 국내 영화의 경우는 앞선 외국 영화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음.
- B 위원 : 안건번호 제2020-5646호~5658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동일한 영상저작물을 모바일 웹하드에서 판매하고 있음. 이 중에 보호원에서 채증한 영상물의 화면이 동일한 것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동일한 시간을 지정하여 영상물을 채증한다고 온라인대응팀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음.
- B 위원 : 동일한 화면으로만 채증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다양한 화면으로 채증하는 것이 낫다고 봄.
- 성원영 전문위원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함. 동일한 채증 화면이 오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

- B 위원 : 불법복제물을 채증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채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심의안건에 동일 저작물의 채증 화면이 같아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음.
- A 위원 : 채증에 대한 내부 지침이 있다면 초를 특정하기보다는 일부 구간을 정해서 채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채증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정해진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정현순 사무처장 : 영상 불법복제물에 대해 동일 시간을 지정하여 화면을 채증할 경우 검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상물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 동일 화면을 채증하는 것이 빠른 검수를 위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음. 다만 외부에서 보았을 때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임.
- 성원영 전문위원 : (영화 '미드웨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5662호는 2019. 12. 31.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185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1. 20.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 속에는 한글 자막이 포함되어 있음.

(음악 'Loveship (가수: 폴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0-5663호의 음원파일은 2020. 1. 21. 발매된 곡으로 앨범 'Loveship'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의 실연자인 '폴킴'이 작사 및 작곡을 하였음. 웹하드에서 해당 음원파일은 68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2020. 1. 21.자 신곡을 이용할 수 있음. 판매자명은 '●●●●●●'로 헤비 업로더임.

(음악 '지친밤 (가수: 백지웅)'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0-5671호의 음원파일은 2020. 1. 22. 발매된 곡으로 앨범 '지친밤'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의 실연자인 '백지웅'이 작사 및 작곡을 하였음. 웹하드에서 해당 음원파일은 104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2020. 1. 22.자 신곡을 이용할 수 있음. 안전번호 제2020-5663호 판매자가 게시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5624호~567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임.
- A 위원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B 위원 : 시정권고하는 의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제2020-5624호~5673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602호~567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5쪽부터 2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2020-444호~2020-451호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2개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되,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4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2개는 부결함.”

○ 제3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제3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21쪽부터 25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97호~940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2. 20.

분과위원장 대행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